

# 미래전략위원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미래전략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,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래전략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학·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 1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주요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
3. 중장기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

**제4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본 회의와 분과회의로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심의사안에 따라 각 해당 위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켜 진행한다.

**제5조 (의결)** 위원회의 의사결정 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7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폐지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'기획위원회 규정'은 폐지한다.